

차열망 활용 고온대응 딸기 육묘 실증사업 계획

- ◇ 딸기 육묘 시 고온기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가 높아 병해 확산 등 애로사항 발생
- ◇ 차열망을 활용하여 시설 내 온도저감 효과 확인

□ 사업개요

- 실증기간: 2024년 5~10월
- 실증장소: 서부농업기술센터 관내 딸기 자가육묘 농가 포장
- 실증규모: 2개소 내외
- 실증요인: 딸기 육묘 시 차열망 활용 시설 내 온도저감 효과 확인
- 실증내용: 차열망 설치에 따른 시설 내 온도 비교

□ 추진계획

- 실증사업 홍보: 농가 홍보 및 홈페이지 게재(3일간)
- 대상자 선정 및 실증재료 공급: 5월
- 주체별 역할
 - 농업기술센터: 실증재료 공급, 재배기술 지도, 조사
 - 실증농가: 실증포장 재배관리, 조사 협력
-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홍보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재배관리	■	■	■	■	■	■
조사		■	■	■	■	
평가					■	■

□ 기대효과

- 고온기 시설 내 온도저감을 통해 고온 스트레스 및 병해 경감
- 딸기 자가육묘 농가 우량묘 생산 도모

실증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성 명 (대 표 자)		생년 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영 농 경 력	년	재 배 작 목			
사업예정지	· 지번: 읍 · 면 · 동 리 번지				
	· 면적: m ² (평)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 ·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실증재배 예정지 등재)					

실증사업 현지심사표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점수	심사방법
1. 실증사업 수혜 여부	○ 실증사업 수혜 여부 - 미 수혜(20) - 5년 이내 수혜(15) - 2년 이내 수혜(10)	20점		문서 확인
4. 사업 예정지	○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10) - 농로변(7) - 기타(5)	10점		현장 확인
2.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등록 5년 이상(20) - 등록 3~4년(10) - 등록 1~2년(5)	20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3. 재배 경험	○ 딸기 자가육묘 경험 및 기술 수준 - 5년 이상(30) - 2년 이상 5년 미만(20) - 2년 미만(10)	30점		농가 면담
5. 사업 이해도 및 의지	○ 사업 이해도 및 실천 의지 - 높음(20) - 보통(15) - 낮음(10)	20점		농가 면담
계		100점	점	
조사자	직 직	성명 성명	(서명) (서명)	

『차열망 활용 고온대응 딸기 육묘 실증사업』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 라 함)와
주소 성명 (이하 ‘실증사업 농업인’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실증과제)

- ## 1. 실증사업명: 수박 유인방법 개선 실증사업

제2조 (협약기간)

1. **협약기간:** 2024년 5월 ~ 2024년 10월

제3조 (역할 분담)

1. 농업기술센터와 실증사업 농업인은 실증계획에 명기되어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증기간 동안 상호 적극 협조하여 수행한다.
2. 실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와 실증사업 농업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의 운영과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농업인은 재배관리 등 실증포장을 직접 관리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 ①사업 계획의 수립 및 결과 작성 ②실증재료의 지원 ③재배기술 및 정보 제공 ④특성 조사 및 평가 ⑤실증포장 운영의 관리 감독

나. 실증 농업인의 역할

- ①실증포장 재배관리 ②재배일지 작성 ③특성 조사 및 평가 협력
④판매 실적 보고 ⑤사업수행 및 계획 보고(시기, 장소, 판매 결과 등)

제4조 (실증재료 및 생산물 처분)

1. 본 실증포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모종 등)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료는 실증사업 농업인이 부담한다.
2. 실증사업을 통한 생산물은 농가에 귀속시킨다. 단,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생산물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 분석용으로 사용한다.

제5조 (특성 조사 및 현장평가)

1. 실증사업 기간 내, 생육 및 수량 특성 조사는 시험연구 조사기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수행한다.
2. 실증사업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농업인,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평가회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결과 활용)

1. 실증결과는 농업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상호 공유한다.

제7조 (부칙)

1. 이 협약은 2024년 실증사업 협약 시 효력을 가지고 시행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증명하고 당사자 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실증사업 농업인이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실증사업 주관부서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창희 (서명/인)

실증사업 농업인

주 소

성 명 (서명/인)